

2024년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민에게 농사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온 가족이 맛봄으로써 가족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농산물의 애용과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밝은 시민정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말농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사용기간)

안산시 주말농장 사용기간은 2024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로 한다.
(임대기간은 시 정책 및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 경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제3조(사용면적 및 사용료)

선정된 1가구당 주말농장 면적은 16.5㎡(약5평, 통로포함)이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시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4조(신청자격)

안산시 주말농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세대주인 자로 공고된 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고 추첨에 의해 선정되어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하며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최종선정)

전자추첨에 선정된 후 정해진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며 **주말농장 개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경작을 포기하거나, 4월 26일까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시 정책에 따라 개발계획 및 사업이 진행되어 경작이 중단될 경우에도 사용료는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제6조(금지작물)

월동작물(동계시금치, 봄동, 마늘, 양파 등)및 옥수수등 재배금지하며, 그 외 키 큰 작물의 식재는 가급적 자제를 원칙으로 하되 **옆 밭과 상호 협의 후 재배**할 수 있다.

제7조(금지행위)

안산시 주말농장 이용 시민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파라솔, 구역 경계물) 및 흙 유실 방지물(잔돌, 벽돌, 판자, 철물 등(파이프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 나. 영리를 목적으로 경작하는 행위
- 다. 경작면적을 임의로 조정하여 확대하는 행위(통로 및 타인 경작지 침범)
 - 경작지 사이 통로와 배수로 임의변경으로 침수 및 배수 불량, 농장관리 및 이동 불편 유발 행위
 - 경작면적 외 경계가 불분명한 땅을 무단으로 편입하여 경작면적 임의 확대
- 라. 비닐피복,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
- 마. 세대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행위
- 바. 지정된 구획 이외에 출입 및 타인에게 반감을 사는 행위
 - 주류 반입 및 음주에 의한 주취 소란 및 난동 행위 금지
 - 주말농장 관리인력(농장감독자 및 공무원)에게 시비, 욕설, 폭언, 폭행행위 금지
- 사. 폐기물, 오물, 타목적 자재 등 농작물 재배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의 농장 반입(퇴비장 투기 포함) 및 토양(흙)을 반출하는 행위
- 아.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미수거하는 행위
- 자. 기타 주말농장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

제8조(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말농장 경작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말농장 이용 승인 취소 및 다음년도 주말농장 신청제한이 있으며, 승인 취소된 밭은 차순위 대기자에게 분양하고 기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가. 주말농장 이용자가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개장 이후 1개월 이상 경작을 하지 않거나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된 경우
- 다. 주말농장에 선정된 세대주가 1필지 이외 여러 필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 모든 경작 필지를 취소 할 수 있다.
- 라. 타인의 경작지 내 작물을 절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 마. 기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손해배상)

안산시 주말농장 경작자가 농장시설 등을 파손한 경우는 안산시에 손해배상을 한다.

제10조(경작구획 복구)

경작자는 경작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경작을 취소당하거나 도중에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지 구획을 복구한다.(미복구 시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 처리함)

제11조(예산)

안산시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재정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조성비(중장비 임차료 등), 교육교재비, 부대시설 설치비(화장실, 휴게소 등), 표찰, 행사운영비 등>

제12조(보고)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주말농장 담당자는 예산 운영현황과 사업추진 결과를 안산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주로 심는 작물

- 잎채소 : 상추, 배추, 열무, 열갈이배추, 썩갓, 아욱, 근대, 시금치, 갓 등
- 열매채소 : 고추, 가지, 토마토 등
- 뿌리채소 : 감자, 무, 당근, 생강 등
- 비늘줄기채소 : 대파, 쪽파 등

※ 재배금지 작물 : 월동작물(마늘, 시금치, 양파 등), 키큰작물(옥수수)